

목 차

정 관	1
-----------	---

정 관

정 관

Genexine

정 관

제정 1999 년 06 월 02 일
개정 2004 년 07 월 05 일
2005 년 09 월 21 일
2006 년 03 월 31 일
2007 년 02 월 26 일
2007 년 06 월 08 일
2008 년 09 월 19 일
2009 년 03 월 19 일
2010 년 03 월 19 일
2011 년 03 월 18 일
2011 년 06 월 30 일
2013 년 03 월 15 일
2016 년 03 월 18 일
2016 년 06 년 14 일
2018 년 03 월 29 일
2019 년 03 월 22 일
2022 년 03 월 29 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제넥신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Genexine, Inc. 라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유전공학방식을 이용한 신약연구 및 개발업
2. 개발한 신기술의 사용권 대여 및 양도업

3. 신기술 개발제품 제조업
4. 신기술 개발제품 판매업
5.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공약품, 수의약품, 농예약품의 제조 및 매매업
6.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제조 및 매매업
7.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8. 수입품의 판매업 및 위탁업
9.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0. 의약품 가공 수탁, 제조시설 및 기구 임대업
11.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등의 제조 및 판매업
12. 위 각호에 연관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enexine.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00,000,000 주로 한다.

제 6 조(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 주(1 주의 금액 5,000 원 기준)로 한다.

제 7 조(1 주의 금액) 주식 1 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

제 8 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 조 (1 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1 종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으로 하며, 누적여부, 참가여부, 의결권 유무 등을 조합하여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없는 1 종 종류주식의 발행총수는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 ② 1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주식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에서 10%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결의로 최저배당률을 정한다.
- ③ 이사회는 발행시에 1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1 종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1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하도록 정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발행시에 1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도록 정할 수 있다.
- ⑤ 이사회는 1 종 종류주식의 발행시 발행일로부터 10 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이 연장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회사가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1 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 10 조 (2 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는 제 9 조에 의한 1 종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이하 "2 종 종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2 종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주식분할, 병합 기타 법령상 허용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 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전일까지로 하되, 발행시 이사회는 발행일로부터 1 년 이상 10 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1 조 (3 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는 제 9 조 또는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각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3 종 종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3 종 종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 1. 3 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 ③ 3 종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시장금리 및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3 종 종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3 종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 주식 및 1 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3 종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 이익으로 상환 대상 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⑥ 회사가 제 10 조에 의한 2 종 종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3 종 종류주식으로 발행할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권 행사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 12 조(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상법」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 4. 「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③ 제 2 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3 조(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 30 조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④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 3 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3 년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10 년 내에 별도 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3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3 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⑩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⑪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5 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 16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7 조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 352 조의 2 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 18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7 일 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3 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회의 결의로 3 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 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9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공모발행 방식의 경우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 월,

사모발행 방식의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 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2.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공모발행 방식의 경우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 사모발행 방식의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1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 분의 50 비율을 한도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 ③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제 60 조에 의한 분기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 ④ 제 1 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 22 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 23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6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24 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25 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 3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6 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 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 및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보조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7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8 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 3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9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30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31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32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3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 34 조의 2(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5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제 1 절 이 사

제 36 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 7 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37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8 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8 조의 2(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 36 조에서 정하는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36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39 조(이사의 직무)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0 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1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2 절 이 사 회

제 42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제 2 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⑥ 이사는 3 개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 398 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4 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5 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45 조의 2(위원회)

- ①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2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절 대 표 이 사

제 46 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 47 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장 감 사

제 48 조(감사의 수) 회사는 1 인 이상 2 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 49 조(감사의 선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50 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 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 48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1 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감사에 대해서는 제 40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2 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3 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 41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 계

제 54 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55 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1.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⑤ 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4 항에 의한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6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57 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58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 55 조 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 59 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된다.

제 60 조(분기배당)

- ①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 월·6 월 및 9 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 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용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 19 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회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⑤ 제 9 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 년 7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 년 09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 년 0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 년 2 월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7 년 6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 년 9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 년 3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 년 3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 조 및 제 17 조의 2 의 개정규정은 2010 년 5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1 년 6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 년 3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 년 3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 년 6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정관은 2019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정관 제 8 조(삭제), 제 8 조의 2, 제 16 조, 제 17 조(삭제) 및 제 23 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2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